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공해자동차등의 성능평가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35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9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김위상의원안(의안번호 제2205835호)	1
2.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2209291호)	3
III . 검토의견	4
1. 저공해자동차등의 성능평가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4
2.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수 준 조정	11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 조항 유효기간 연장 ..	16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5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3월 24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위상의원안(의안번호 제2205835호)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

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계획의 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법률 제18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하여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과태료로 낮춰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하려는 것임.

2. 윤준병 의원안(의안번호 제2209291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저공해자동차등의 성능평가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수소자동차,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도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제작자에게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 ----- ----- ----- ----- ----- ----- -----.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	1. ----- -----.

현행	개정안
우 <u>제58조의2제1항</u>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 6. (생략) ④ ~ ⑩ (생략)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u>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u>)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 ⑮ (생략) ⑯ <u>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u>	-- <u>제58조의3제1항</u>----- ----- ----- ----- ----- ----- -----. 1의2. ~ 6.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u>이하</u>----- ----- ----- ----- ----- ----- -----. ⑫ ~ ⑮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 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 <u>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u>

현행	개정안
	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의2 (생략)	제58조의3 (현행 제58조의2와 같음)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 ----- ----- 제58조의3제1항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 ~ 제58조의11 (생략)	제58조의5 ~ 제58조의12 (현행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11까지와 같음)
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13(인·허가 등의 의제)

현행	개정안
① 환경부장관이 <u>제58조의11제1항</u>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u>제58조의11제1항</u>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① ----- <u>제58조의12제1항</u> ----- ----- ----- ----- -----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② ----- <u>제58조의12제1항</u>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58조제3항¹⁾은 ①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1)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

보급, ②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③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8조제19항²⁾에서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환경부장관이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성능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58조제11항³⁾에서 “저공해자동차등”으로 약칭하고 있는 ①저공해자동차, ②저공해건설기계 또는 ③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

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 2)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⑨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3)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서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58조의2제2항은 저공해자동차등 성능평가 시 자동차 제작자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 상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법제적인 측면에서 안 제58조의2와 같이 저공해자동차등의 성능평가의 실시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하나의 조항에 포괄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과징금 규정을 새로운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행법⁴⁾은 규제 및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장(章)을 구분하고

4)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있으며, 각각의 장에서 과징금 대상이 되는 실체적 조항과 과징금 처분의 근거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2.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 조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제2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u>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u>	제91조의2(벌칙)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 ----- ----- -.

현행	개정안
1. ~ 1의3. (생략) <u><신설></u>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5. (생략)	1의5. 제58조의3제5항----- ----- -----
2.·3. (생략)	1의6. (현행 제1호의5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② ----- ----- -----.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5. 제58조의6제1항----- ----- -----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8조의25)에서는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 5) 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 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판매자는 고시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전년도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개요]

목적	자동차 제조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 모델 다양화 등 유도						
대상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간 판매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 4,500대 이상인 자동차판매자(총 10개*) *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벤츠, BMW, 토요타,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혼다 ※'09년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수량이 4,500대 미만인 자는 제외						
보급목표	차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저공해차	15%	18%	20%	22%	24%	26%
	무공해차	—	4~10%	8~12%	11~15%	14~18%	18~22%
유연성	미달성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급실적 거래·이월 등 실적 유연성* 제도 시행('22년 실적부터 적용) * (①사용) 저공해↔무공해 실적 상호교차 활용, (②거래) 참여기업 간 초과실적 거래, (③이월) 초과실적 3년간 이월, (④전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실적 등을 보급실적으로 인정						
기여금	실효성 제고를 유연성 제도 결과 적용 후 목표 미달성 제작사에 기여금* 부과(실제 기여금 부과는 3년 후 '26년부터 부과 예정) * ('22년~'24년) 60만원/점, ('25년~'27년) 150만원/점, ('28년~) 300만원/점						
실적 인정	차량 판매량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고, 차종에 가중치(연비, 주행거리 등 고려)를 부여한 별도 산정기준 적용 ※(1종: 전기·수소) 1.2~3.0점, (2종: 하이브리드) 0.6~1.2점, (3종: 가스·휘발유) 0.6점						

※자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행법⁶⁾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상의 서류 제출 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의 실질이 유사함에도 각각 다른 정도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음⁷⁾.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및 보급실적 제출 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시행규칙 제79조의128))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시행규칙 제79조의139))
제출기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내용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1.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재 수준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급실적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에서 발췌

6) **법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7) 단,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미승인 또는 보급실적 미제출로 인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음(0건).

8) **시행규칙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실질을 고려한 제재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 **시행규칙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의제 조항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승인 및 인·허가 의제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윤준병의원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임(김위상의원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 삭제).

현 행	김위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 1 및 제58조의12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 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 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 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삭 제>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2030년----- ----- -----.

현행	김위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현행법¹⁰⁾에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

10) 법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14개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의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수소차 도입 초기 충전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¹¹⁾로서, 해당 설치계획 및 인·허가 의제 조항 도입 당시 (2021.4.13. 일부개정, 2021.7.14. 시행,) 부칙¹²⁾에서는 법률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음.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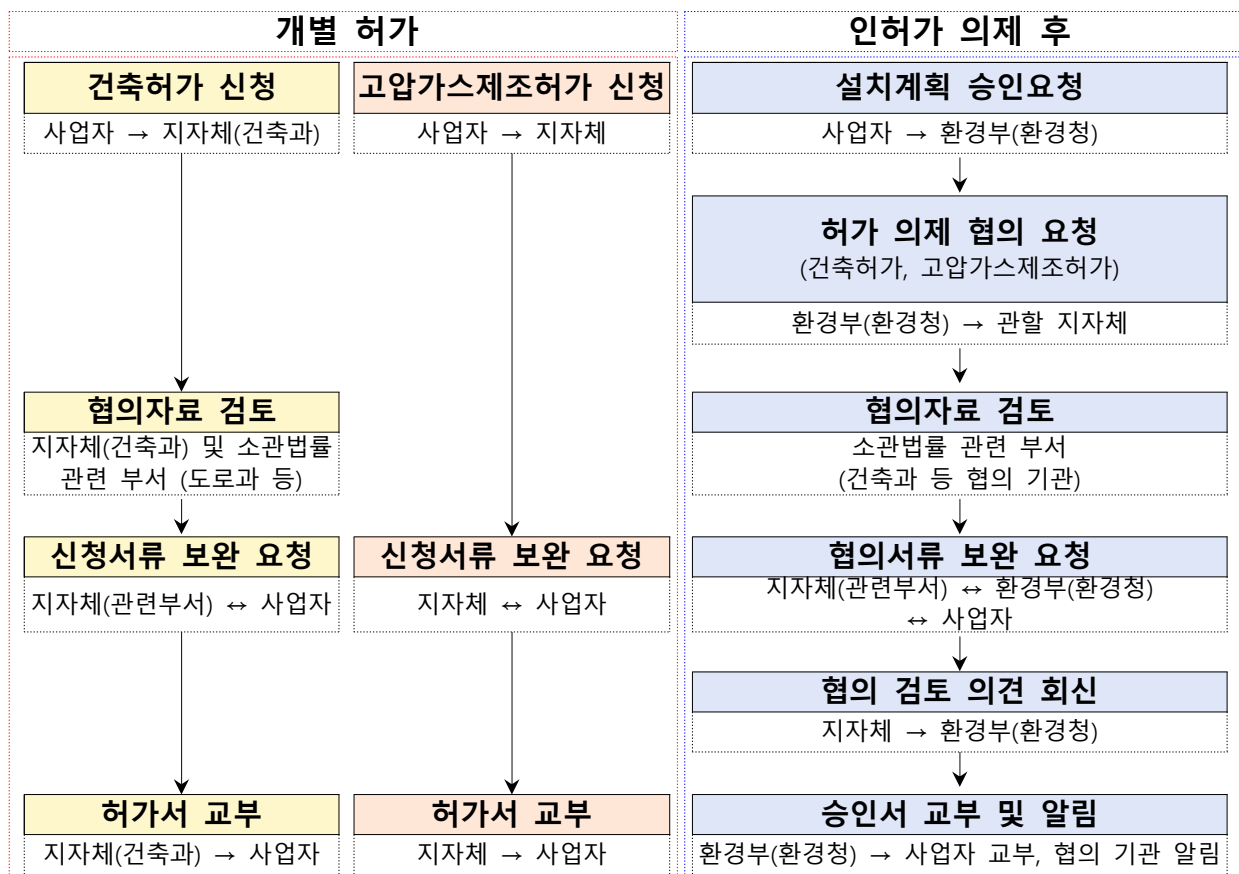
11) 2020년 9월 서울시에서 수소차 대비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인허가 특별 도입을 건의하였음.

12)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설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 설치계획 제출 및 승인을 통한 환경부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현재까지 의제되어 왔던 개별법상의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수소차 인·허가 의제 시행 전·후 절차 비교]



자료: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의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윤준병의원안)하거나 삭제(김위상의

원안)하려는 것으로, 2024년 8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에 비하여 수소
연료공급시설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어 신속한 구축
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
을 연장 또는 삭제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³⁾.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현황('25.2. 기준)]

(단위: 기)

구 분		설치현황(누적)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2
전 기*		64,188	106,701	205,205	305,309	414,686	429,653
	급속	9,805	15,067	20,737	34,386	47,083	48,399
	완속	54,383	91,634	184,468	270,923	367,603	381,164
수 소		70	170	229	300	386	406

*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시스템 추출 기준

문 의 처

02)6788-5536

13)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수소충전소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